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2.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19

(2016. 3. 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검토보고]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 안 건 명

-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2월 2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회부일자 : 2016년 2월 26일(금)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9조, 제8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제44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23조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2006호(2016.2.1))

5. 제출이유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구(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6. 사업계획(안)

- 동 계획안은 2002. 6. 15. 준공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384㎡)의 면적이 장애인 휠체어 및 시각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부족으로 보강공사를 계속 해왔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구(舊)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고 대피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안)
 - 1) 사업명 : 구(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 2) 사업기간 : 2015. 9월 ~ 2018. 3월
 - 3) 위치 :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구(舊) 청사 내 보건소 건물
 - 4) 규모 : 지상4층, 연면적 2,111.88㎡ (1979.9.3 준공)

층별	연면적(㎡)	배치(안)	비고
계	2,111.88		
1층	527.97	로비, 주간보호시설, 사무실	
2층	527.97	치료실(9개), 관장실, 사무실	
3층	527.97	프로그램실(5개), 소강당, 사무실, 요리교실	
4층	527.97	직업재활시설, 회의실, 식당	
옥탑	44.4	체력단련실(증축 가능시)	

※ 舊 보건소 건물 활용 시 연면적 727㎡ 증가됨(총전 : 연면적 1,384㎡ => 변경 : 2,111㎡)

5) 총 공사비 : 3,8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공사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고
3,895	95	3,344	419	37	

- 공사내용(부분리모델링) : 창호교체, 승강기, 외벽, 화장실, 편의시설 등 설치

6)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

가. 재원별 예산 : 시비 1,947백만원, 구비 114백만원, 복권기금 1,834백만원

나.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비	구비	시비	기타 (복권기금)	시비	기타 (복권기금)
총 계	3,895,000	18,700	95,000	1,266,050	1,201,640	681,450	632,160
공 사 비	3,344,000			1,113,910	1,049,500	614,940	565,650
설 계 비	95,000		95,000				
감리비	419,000			146,650	146,650	62,850	62,850
시설부대비	37,000	18,700		5,490	5,490	3,660	3,660

[검토의견]

○ 현(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 6. 15일 준공된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409.5㎡ 건물로 민간위탁(사회심리재활외 5개 프로그램과 기타 특화사업 등)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장애인 휠체어 및 시각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공간이 협소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부족 등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음

< 그간 보강공사 내역>

- 2012년 : 정보화개선사업 => 5백만원(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 2013년 : 외벽개보수 => 5,269만원(시비 2,634만 5천원, 구비 2,634만 5천원)
- 2015년 :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프로그램실 난방개선 및 정보화기능개선 => 3,061만원(시비 1,530만 5천원, 구비 1,530만 5천원)
- 2016년 : 엘리베이터 유리교체 및 차량교체 => 3,293만원(시비 1,646만 5천원, 구비 1,646만 5천원)

○ 2016년 2월 현재 마포구 등록장애인은 13,806명(구 전체인구의 3.63%)이며,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8개 중 연면적 기준 마포구는 24번째(1,409.53㎡)로 서울시 평균 면적(평균 면적 : 2,935㎡) 이하로 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하다 보니 장애인의 활동환경을 적게 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할 수밖에 없어, 안전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그 간 관련부서에서는 마포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현(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는 노후화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수화통역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구(舊)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려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검토의견으로는 현(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사용 시 회전 반경이 적고, 시각 장애인 이동 거리를 고려한 충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 특성 상 일반인과는 다른 화재 피난 대피유도 시설 등 이 필요하나 공간부족 등으로 인한 일부 보강공사만으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고 재난 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 요구 수요(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의 증가로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간은 부족하여 현(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1,384\text{m}^2$)은 장애인복지회관 등으로 일부 전용하여 활용하고, 부족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구(舊)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안)'은 적정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유의할 사항으로는
 - 1)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2016.2월 서울시에
 - 2) 2017년 복권기금 => 2016.3월 경 서울시에 시기에 늦지 않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서울시 및 국가 예산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는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 1) 구(舊) 보건소 건물에는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임대 중에 있었고 임대기간이 2015.12.31일 만료되었으나, 일부 시설물 등 퇴거를 못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퇴거조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 설계용역비 9,500만원은 구(舊) 보건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만일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서울시나 복권기금에서 예산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마포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에 관한 재원마련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재검토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다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할 것임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

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계획 : 취득에 관한 계획, 처분에 관한 계획
- 관리계획 변경 : 취득에 관한 변경,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취득 : 매입, 기부체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체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둘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6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참 고 자 료

■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연면적 기준)

(기준일: 2015. 1월)

연번	구별	시설명	면적	총수	준공	설립	비고
1	강동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6,500	지하1/지상3	82.10.30	시립	
2	양천구	양천구립장애인복지관	5,480	지하2/지상4	04.12.08	구립	
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5,478	지하2/지상5	99.08.23	법인	
4	서초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5,403	지하1/지상3	09.10.9	구립	
5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복지관	4,382	지하2/지상4	08.1.18	시립	
6	강동구	성분도복지관	4,143	지상4	87.07.02	법인	
7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4,047	지상3층		구립	
8	동작구	남부장애인복지관	3,744	지하1/지상2	86.10.30	시립	
9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3,206	지하1/지상3	97.06.23	법인	
10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3,102	지하1/지상3	12.7.1	구립	
1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2,979	지하1/지상3	92.12.29	법인	
12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	2,953	지하1/지상4	93.12.31	법인	
13	노원구	북부장애인	2,939	지하1/지상2	97.07.30	시립	
14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2,929	지하1/지상5	91.12.07	법인	
15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	2,872	지하1/지상6	93.11.30	구립	
1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2,460	지하1/지상5	07.7.11	구립	
17	구로구	성프란치스코	2,306	지하1/지상4	02.12.09	법인	
18	강남구	구립강남장애인복지관	2,119	지하3/지상4	09.1.1	구립	
19	노원구	성민장애인복지관	2,066	지하1/지상3	09.11.13	법인	
20	금천구	금천장애인복지관	1,934	지하1/지상5	06.11.28	법인	
21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1,904	지상6	09.7.20	법인	
22	용산구	용산장애인복지관	1,712	지하1/지상4	09.9.25	구립	
23	송파구	인성장애인복지관	1,452	지하1/지상4	95.12.31	구립	
24	마포구	구립마포장애인복지관	1,384	지하1/지상7	02.06.15	구립	
25	강북구	강북장애인복지관	1,362	지하1/지상7	98.04.01	구립	
26	구로구	에덴복지관	1,215	지하1/지상3	94.01.10	법인	
27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1,101	지하1/지상7	13.3.8	구립	
28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	1,020	지하1/지상5	98.10.10	구립	

○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복지관 46개 중 41번째, 종합복지관 28개 중 24번째에 해당

■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물 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409.53m^2$, 부지면적 $399.5m^2$	
준 공 일	2002.6.15	
운영인력	26명	
층별 구성	합계	$1,409.53m^2$ 공중화장실 $32.44m^2$ 포함
	지하	$266.57m^2$ 체력단련실($26.05m^2$), 기계실, 강당($107.12m^2$)
	1층	$80.10m^2$ 공중화장실($32.44m^2$), 안내실, 기타
	2층	$212.49m^2$ 직업적응반($61.09m^2$), 보호작업장($50.60m^2$) 평가실 ($11.62m^2$), 화장실 등 기타
	3층	$212.49m^2$ 작업치료실($24.05m^2$), 언어치료실($11.62m^2$) 사회적응실($48.08m^2$), 기타
	4층	$212.49m^2$ 관찰실($24.05m^2$), 조기교실($28.40m^2$), 사회적응실($62.14m^2$), 기타
	5층	$212.49m^2$ 통합사무실($119.44m^2$), 평가실($11.62m^2$), 화장실, 기타
	6층	$212.49m^2$ 식당($100.03m^2$), 화장실, 평가실($11.62m^2$), 자료실
	7층	$50.94m^2$ 옥외 휴게실, 체험장, 옥탑
사업비 (백만원)	총계	3,804
	재원별	국비: 360, 시비: 2,055, 구비: 669

※ 장애인복지관 연면적 : $1,384m^2$ (1층 공중화장실 $25.53m^2$ 등 면적 제외)

■ 舊 청사내 보건소 건물 활용 및 현황

구 分	금회(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舊 청사내 보건소	
기 간	2015년 9월 ~ 2018년 3월	
내 용	전체 규모	· 연면적 : $2,111.88m^2$ (지상 4층)
	세부 내용	<input type="checkbox"/> 舊 청사 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창호교체, 승강기, 외벽, 화장실, 편의시설 등 설치) <input type="radio"/> 1층 : $527.97m^2$, <input type="radio"/> 2층 : $527.97m^2$, <input type="radio"/> 3층 : $527.97m^2$ <input type="radio"/> 4층 : $527.97m^2$, <input type="radio"/> 옥탑 : $44.4m^2$ ※ 현재 강북청년창업센터 사용중 - 2015.12.31. 임대계약 완료하여 사무실 집기류 등 일부 남아 있음 ※ 1층은 중앙도서관건립 공사현장 사무실 활용중임.
사업비 (백만원)	총계	3,895
	재원별	시비 1,947, 복권기금 1,834, 구비 114
	회계별	일반회계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06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6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가능보강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6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내구력을 강화하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방지 및 편의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 경위

- '15. 2. 3 : '16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
- '15. 4. 13 : '16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우선순위 선정요청
(서울시→복지재단, 75개 사업, 사업비 9,692,699천원)
- '15. 5. 8 : '16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제출
(복지재단→서울시, 지원 3사업 428,135천원, 미지원 1사업)
- '15. 6. 24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6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재단→서울시, 지원 72사업 6,369,893천원, 미지원 21사업)

※ 재단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이상 지원 검토의견

- 최종결정 : 장애인복지관 60점, 의료재활 64점, 재활체육 71점, 수화통역센터 61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15.12월말 현재)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 시설	재활체육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센터
계	83	45	5	6	1	26
시립	10	9		1		
구립	15	13	1	1		
법인	58	23	4	4	1	26

2 2015년 운영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A/B)
계		14,168,547	11,865,678	2,302,869	8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법 인(14)	1,454,095	1,409,378	44,717	97%
	시 립(7)	1,436,674	1,390,041	46,633	97%
	구 립(7)	170,427	169,964	463	99%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2)		9,382,339	7,202,339	2,180,000	명시이월
체육재활시설 기능보강(5)		531,066	531,066	0	100%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4)		31,041	30,825	216	99%
생활이동지원센터(1)		1,162,905	1,132,065	30,840	97%

※ () 시설수

□ 예산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0	52	12,654,274	568,022	11,080,534	170,427	835,291
장애인복지관	28	39	3,398,163	-	3,061,196	170,427	166,540
의료재활시설	2	2	7,499,951	568,022	6,325,382		606,547
체육재활시설	5	6	551,184		531,066		20,118
수화통역센터	4	4	34,536		30,825		3,711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1,170,440	-	1,132,065	-	38,375

□ 사업실적

- 장애인복지관은 39개 사업에 3,061백만원 지원(집행률 98%)
- 체육재활시설은 6개 사업에 531백만원 지원(집행률 100%)
- 수화통역센터는 4개 사업에 31백만원 지원(집행률 99%)

3 2016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최근 5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선정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지원
- 보조금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내 집행

□ 총 기능보강 사업비 8,687,645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42개 시설 50개 사업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2	50	8,687,645 (100%)	1,315,596 (15.1%)	6,983,060 (80.4%)	148,426 (1.7%)	240,563 (2.8%)
장애인복지관	28	34	2,324,090	-	2,058,907	148,426	116,757
의료재활시설	4	4	4,428,135	1,315,596	3,069,725	-	42,814
체육재활시설	3	5	1,213,398	-	1,134,908	-	78,490
수화통역센터	6	6	181,022	-	178,520	-	2,502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541,000	-	541,000	-	-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 전액 시비
- 구립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 최저10% 이상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기능보강(개·보수공사) 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4 세부집행 방법

①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개보수사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팔 :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대행할 수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 1억원 미만의 계약을 대행 시행중으로 시설의 계약 부적정사례 방지위해 계약대행이 필요하며 본 내용은 계약대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시설발주의 경우 적용함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 제4절.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및 30조 2항 참조)
-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 물품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② 개보수·장비보강 등 분야별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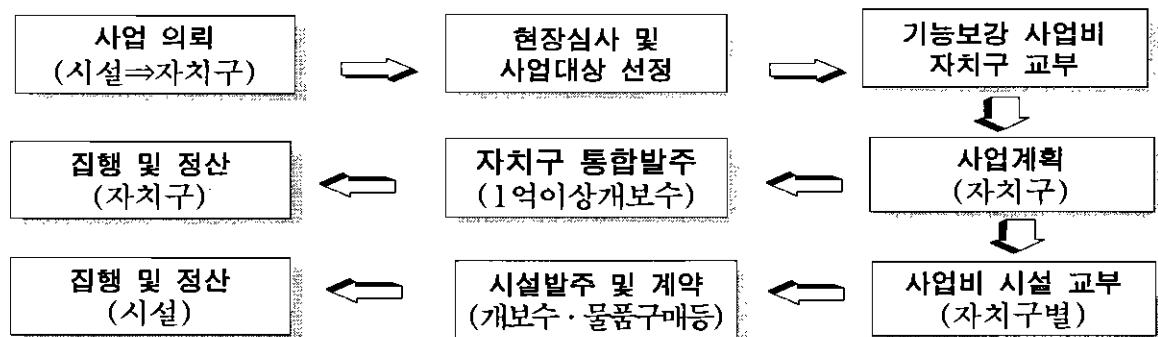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 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 · 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 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③ 사업집행 절차



5 행정사항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의 변경은 적정성 및 변경사유 등 검토 후 신청 승인 후 시행
- 집행낙찰차액은 집행금지 원칙(부득이 사용시에는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16년 기능보강 사업비 조기 신청 : 2016. 2.19까지

- 제출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총괄서식
- 기타 신청서식은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15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2016. 2.29까지

- 불임 1. 2016년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1부.
2. 보조금 신청서식 각 1부. 끝.